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19. 10. 2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0월 1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0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19. 10.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정국장 김성영)

가. 제안이유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목적 및 기능(안 제2조~제3조)
- 협의회 구성 및 인원(안 제4조~제6조)
- 협의회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 실무협의회(안 제13조)
- 자문위원 및 사무국(안 제14조~제15조)
- 경비부담(안 제1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울시 자치구 22개구를 비롯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영등포구회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회의운영 절차 및 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도록 하는 등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서는 협의회 경비 부담 및 자문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회계연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공동체 해체와 지역 고유 특색의 퇴색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 경험과 노하우 공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 매년 예상되는 지속적인 예산부담과 각종 협의회 난립에 대한 부정적 판단